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6. 23 선고 2016나570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]

---

## 전 문

원고,피항소인 A

피고,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7. 6. 9

판결 선고 2017. 6. 23

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6가단101273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.  
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E 전 2, 101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비닐하우스 견사 96㎡를 철거하고,위 토지를 인도하라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원고는 2015. 3. 23. 경기 연천군 E 전 2,10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등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( 의정부지방법원 피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(가)부분(이하 '이 사건 토지 중 견사 점유 부분'이라 한다) 및 이 사건 토지에연접한 경기 연천군 I 토지 지상에 견사(이하 '이 사건 견사'라 한다)를 축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2,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,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사건 견사의 소유자내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처분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사건 견사중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부분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견사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,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제 1의 나 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     조윤신평사      강지현판사      이승엽

별지